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8 (화)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나. 회부일자 : 2005. 10. 25(화)

다. 상정일자 : 2005. 10. 25(화) 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

2. 제 안 이 유

가. 평창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계승발전을 위한 개발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명품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 요 골 자

가. 향토음식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회 구성 (안 제3조 내지 제6조)

나.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 발굴육성 (안 제6조,제7조)

다. 향토음식연구회 구성 및 연구활동 전개 (안 제9조, 제10조)

라.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위한 위탁업무 실시 (안 제13조)

4. 검 토 결 과

가.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전통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명품화, 세계화를 시키고자 향토 음식의 발굴·육성 및 계승 발전을 위한 개발 연구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나. 안 제7조(육성 보호) 3과 안 제12조(음식연구전문기관 설립지원)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지원방법, 규모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다.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 평창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계승발전을 위한 개발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명품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향토음식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회 구성 (안 제3조 내지 제6조)
나.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 발굴육성 (안 제6조,제7조)
다. 향토음식연구회 구성 및 연구활동 전개 (안 제9조, 제10조)
라.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위한 위탁업무 실시 (안 제13조)

2.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당초예산 반영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2005-185(2005. 6. 2 ~ 6. 25).
제출의견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 이라 함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회) ①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산하에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평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사항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군 음식업지부장과 지역 음식문화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군수는 발굴·개발된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군수는 향토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개발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평창군에서 주관하는 음식관련 축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④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육성 보호)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의 육성과 보존·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평창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
2.향토음식 및 지정업소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3.향토음식 표지판, 그릇류, 홍보시설물 등의 지원
4.기타 향토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8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향토음식연구회) ①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창군향토음식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의 발굴·개발 연구
2. 향토음식조리백서의 발간
3. 좋은 식단의 연구
4. 지정된 향토음식 및 업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
5. 향토음식의 연구발표회·평가회 및 업소모델 연구
6. 기타 향토음식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 등

제10조(연구회 구성 등) ①연구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연구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음식기능을 보유한 자와 음식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연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및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음식연구전문기관 설립지원) 군수는 음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내에 음식산업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강원도내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연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시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